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강릉시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강릉시장 AG은 2018. 7. 1.부터 2019. 1. 5. 현재까지 시장의 직위에서 관내 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8. 7. 3. [표]와 같이 ■읍 읍장 AH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총 6명⁴⁴⁾을 국장 직위의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승진임용하였다.

[표] 4급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임용 현황(2018. 7. 3. 기준)

연 번	성명	직렬	전 직위	발령 직위	승진소요 최저연수 충족일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1	AH	행정	■읍장	▲국장 직무대리	2018. 10. 1.	미심의 ³⁾
2	AI	행정	♠과장	▶국장 직무대리	2018. 10. 1.	미심의
3	AJ	행정	♣과장	▼국장	2017. 7. 1.	심의
4	AK	시설	♥과장	◀본부장 직무대리	2018. 12. 19.	심의 ⁴⁾
5	AL	보건	★과장	●소장 직무대리 ¹⁾	2018. 12. 19.	심의
6	AM	농촌지도	◎과장	◆센터 소장	— ²⁾	심의

주: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장은 의사 또는 보건 관련 직렬만 임용 가능하며 해당 직렬에 승진대상자가 없어 직무대리로 임용함

2.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 2개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AM은 이미 농촌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센터

44) 2018. 7. 1. 기준 강릉시의 4급(국장급) 결원은 6명으로 직렬별로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 보건직렬 1명, 농촌지도직렬 1명(직위승진)의 승진요인이 발생함

터 소장으로 직위 승진함

3. 행정직렬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있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AH과 AI의 직무대리 지정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위 2명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2018. 10. 4.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날 4급 승진임용함
4. 시설직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심의에서 제외되고 AK만 심의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발생하였고, AK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2018. 12. 24.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26. 4급 승진임용함

자료: 강릉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에 따르면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법정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지정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⁴⁵⁾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⁴⁶⁾에 한하여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전임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정한 바와 다르게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아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특정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사람은 강릉시장에 공식 취임⁴⁷⁾하기 전인 2018. 6. 20.경 강릉시 총무과로부터 2018. 7. 1. 기준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의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여 승진자격을 갖춘 5급 직원은 행정직렬 3명 및 시설직렬(□직) 1명이라는 보고⁴⁸⁾를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8. 7. 1.과 7. 2. 두 차례에 걸쳐 ■과장 AN 등으로부터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4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에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따라 승진임용범위를 규정함

46)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직무대리하고 있는 지위가 공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함

47)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에서 강릉시장에 당선된 후 2018. 7. 2.(월) 공식 취임함

48) 강릉시 총무과는 시장이 시정 인수인계로 바빠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인사요인 발생 보고서와 승진후보자 명단만 서류로 보고함

그런데도 위 사람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⁴⁹⁾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 중 2자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AH과 AI⁵⁰⁾을 각각 ▲국장 및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2018. 7. 3. 직무대리(지정·전임대리) 발령하였다. 그리고 AH과 AI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하였으며, 2018. 10. 1. 위 2명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같은 해 10. 5. 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시설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서는 2018. 7. 2.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시설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유일한 후보자(□직 AO)를 승진시키지 않기로 한 후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 대상을 시설직렬 중 토목직으로 한정⁵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일한 후보자는 2018. 7. 2.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직(AK⁵²⁾)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되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

49) 행정직렬 승진대상자 중 BN는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시장은 취임 전에 주변 평가를 듣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함

50) 2018. 7. 1. 현재 AH과 AI는 5급 근무연수가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를 충족하지 못함

5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제2조 제5항 [별표 5]에서 ◀본부장은 행정, 기술직군(토목·건축 직류 등)중에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음

52) 2018. 7. 1. 현재 AK는 5급 근무연수가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를 충족하지 못함

을 침해하였다는 내용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 관련하여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릉시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제6조 제5항 제2호의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⁵³⁾을 준용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대리자⁵⁴⁾가 있어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지정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공무원 인사에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에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AH 등 4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강릉시는 국장 결원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국장 및 ►국장은 2018. 7. 3. 직무대리 발령한 후 같은 해 10. 5. 직무대리를

53) 「직무대리규정」상 위 규정에 따라 전임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도 고위공무원단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외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54) ▲국장은 ◆과장 BO, ►국장은 △과장 BP가 법정대리자임

해소하고자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쳤고, ◀본부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 토목직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 7. 2. 인사위원회에 심의요구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등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시장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한 점, 강릉시 인사위원회는 2018. 10. 4. AH과 AI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승진대상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사유로 위 2명을 승진자로 심의·의결하는 등 직무대리 지정이 인사위원회 심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장은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하였으며 AK가 ◀본부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목직류를 승진직렬로 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업무를 처리하여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강릉시장 AG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